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MINECON)
국립수산양식청(SERNAPESCA)(이하 “양측”이라 한다)은

수산물 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은 국제적 주요 현안 중 하나이며, 이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요건에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지하며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칠레공화국이 수산물 관리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 및 이행하기 위한 기술 협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수입식품 관련 모든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전안전관리(현지실사),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이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일반 수산물 및 양식법 No.18.892 개정·조정 및 체계화된 본문을 제정하는
칠레공화국 최고 법령 No. 430 제122조 제1항에 따라 수출용 수산물 및
양식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를 국립수산양식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항 목적

동 약정은 칠레공화국(이하 “칠레”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사람이 소비하기에 안전하다는 점을 보장하고
식품안전관리 분야의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적용범위

동 약정은 사람이 소비하기 위해 칠레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a. 양식수산물
- b. 활수산동물을 포함한 원료수산동식물
- c. 단순가공품, 즉 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가열·자숙·건조 또는 염장·염수장·훈제·냉장·동결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식물

제3항 운영절차

1.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국립수산양식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하며, 국립수산양식청은 등록된 제조업체 명단을 식약처에 제공한다.
2. 국립수산양식청은 제조업체가 양측이 인정한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식약처가 등록 제조업체 명단을 인정하면 검사 빈도를 포함하여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절차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국립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4. 동 약정의 이행이 용이하도록 국립수산양식청은 식약처가 칠레의 등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국립수산양식청은 칠레 위생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공업체 명단에 대한 세부 사항(업체명, 주소 등 한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안전 규정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4항 위생증명서 발급

국립수산양식청은 한국에 수출되는 수산물이 인체에 해로운 세균, 유독·유해 물질 또는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상기 제품의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등록 제조업체 업체명 및 등록 번호 등의 정보는 수입 제품 포장에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 혹은 표기한다.

제5항 통보절차

1. 국립수산양식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즉시 국립수산양식청에 해당 상황을 통보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우, 식약처는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가공·포장한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2. 상기 언급된 식약처의 통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수산양식청은 검사, 시험, 검증 및 선적승인 절차를 조사하고 식약처에 문제 원인 및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일방이 상대측 조사결과에 대한 합동조사를 요청하면 해당 요청이 국제적 약속에 부합할 경우 상대측은 요청에 응한다.

제6항 접촉창구

양측은 이로써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기타 사안의 논의를 위해 직접적인 접촉 창구를 아래와 같이 개설한다.

- a. 한국 측 접촉 창구: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 b. 칠레 측 접촉 창구: 국립수산양식청 식품안전인증부

제7항 인적교류

양측은 검사관 또는 전문가 교류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이동 및 숙박비용은 검사관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수산물 위생검사 및 검사방법에 대한 모니터링 분야에서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양측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한다.

제8항 일반조항

- 동 약정은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 동 약정은 각 국의 법과 규정 범위 내에서 이행되며 양측의 예산 및 인력 운용에 따른다.

제9항 의견 해결

동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견해 차이는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0항 효력, 기간 및 개정

- 동 약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되며, 5년 간 유효하다. 일방이 동 약정을 종료할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향후 5년 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 동 약정은 양측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 동 약정서는 2019년 3월 27일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각자 동등히 유효한 한국어본, 스페인어본,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국립수산양식청장

이승용

Kallando